

#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

의안 번호	제 117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3. .  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는 천재지변,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,
- 나. 사회재난\*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\* 이태원 사고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“특별재난지역”으로 선포('22.10.30.)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감면대상자

-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  
(다만,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)

## 나. 감면내용

-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(구세)를 면제한다.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【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】
-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【지방세 감면규모 등】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# 라. 기 타

-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-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